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선임에 학생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

학내에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기구인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갖추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결과정도 무시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그 동안 제대로 사건해결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위원 선임에 있어서 학생의 선택권은 전무하다. 대책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 교학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어 총장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대책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대책위를 구성하는 다른 당연직 위원들과 교수 위원들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없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성폭력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대책위원들 때문에 대책위가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총장 선거 이후 바뀌는 대책위원 선임에 있어서 어떠한 요구를 할 통로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학칙대로라면 대책위 위원이 선임되는데 있어 학생들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이전 대책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대책위 운영을 개탄하며 지켜봐야 할 것이고,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후에야 대책위를 규탄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위가 이러한 행태로 계속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책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탄과 요구로 피해자가 받게 될 2중, 3중의 피해를 미리 막아내야만 한다. 그 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탄과 요구로 피해자가 받게 될 2중, 3중의 피해를 미리 막아내야만 한다. 그 위에 대해서는 대책위원 선임 시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 교수 위원 3인의 선임에 있어 현재 학칙은 대책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교학부총장과 각 실처장들이 당연직으로 대책위원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일반교수 3인에 대한 선임만큼은 학생(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현재 반성폭력 학칙 개정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김중기 대책위원장의 무책임한 사직 사태를 접하며 새로운 요구로 학칙 개정안을 수정하여 다시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개정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 대책위 규탄과 함께 독자적인 목소리로 싸워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학생측 개정안 실현

반성폭력 학칙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해 12월 제1차 학칙개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열렸고, 학교 측에서도 학칙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번 교육투쟁의 중요한 사안 중 한가지로 여전히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꼽고 있는가. 그것은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개정'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 실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학칙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학칙이 제정된 이래 끊임없이 드러나고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제1차 소위원회 결과와, 그 동안 학교가 성폭력 문제에 있어 어떻게 일관해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모두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 소위원회 때 가해자 지위 변동 연세대학교에서는 실제로 가해자의 지위가 변동됨에 따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대책위가 사건을 종결지어버리는 경우가 수차례 계속되었다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해자가 졸업을 해버리거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졸업유보나 사표수리연기와 같은 조치로 사건이 미해결로 끝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는 '가해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지만,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지 않아도 졸업허가를 해주지 않는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아량으로 가해자들이 마음껏 졸업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기가 막힌 노릇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인 2003년 교육투쟁 때 도출된 협약서에는 분명히 성폭력 상담실 전임 상담원을 2명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강의 평가서에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 여부를 첨가하겠다는 약속, 여교수 임용 비율을 20%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 모두 언제 지켜질지 모를 기만적 약속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하겠다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피해자가 학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 조항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다듬어 보완한 학칙 개정안이 소위원회 테이블에서 무참히 잘려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반성폭력 학칙 개정'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학생측 개정안 실현!'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학교 측의 기만적 약속에 걸려들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 신설, 성폭력 상담실 독립

작년 한 해 연세대학교에서만도 미해결로 끝나버린 3건의 교수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며 또한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국교원대, 서강대, 부산대 등에서 우후죽순처럼 불거져 나오는 교수성폭력 사건 소식을 접하며, 그 동안 묻혀져 있다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교수성폭력 사건을 학칙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일부 교수들은 끊임없이 성폭력 가해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징계도 하물며 저지도 받지 않은 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반성폭력 학칙이 실제로 그들에게 전혀 위협(혹은 경고조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똑똑한 가해 교수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 덕분에 피해 학생이 결코 문제제기 하지 못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성폭력을 학칙으로 막지 못한다면 누가, 무엇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직위에 의한 권력을 매개로 한 교수성폭력은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상기할 때, 반성폭력 학칙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자리 학칙도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과제로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더 이상 교수 직위를 악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저지를 수 없도록 실질적인 압력으로 학칙을 실현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성폭력 상담실의 독립성 확보.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 성폭력을 문제제기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지지와 실질적인 사건 해결 지원을 보장하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학내의 성폭력 상담실은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교내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연세대학교 성폭력 상담실은 이런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학교 성폭력 상담실은 현재 여학생처 산하 기구로 존재하며, 상담원 한명만이 상담실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여학생처의 하위 기구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학생처의 업무와 혼재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실의 독자적인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또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내 행정에서 상담실의 업무가 간과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업무는 '여학생처 산하의 한 기관'이 하는 일로 취급되어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학내 다른 기관들 사이에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담실이 독자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인력 보충과 상담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장 직선제! 막내 여성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는 총장 무부들을 인정할 수 없다!
총장 직선제와 더불어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학생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 - 학생측 개정안 실현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정상화/대책위원 선임시 학생참여 보장/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 신설/ 성폭력 상담실 독립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